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- 385 호

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원활한 의무이행 및 신·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,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, 전력계통 및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우선선정방식 개선(제10조 개정)

나.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(제11조의2 개정)

- 다. 2020년도 신규 공급의무자 추가(별표1 개정)
- 라. 흑액에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0.25 적용(별표2의 표 개정)
- 마. 건축물 태양광의 '건축물' 기준 개선(별표2의 비고1 개정)
- 바. 그룹 I 공급의무자의 석탄혼소 가중치 축소(별표2의 비고13 신설)
 - ※ 현행 별표2의비고 제13호~제16호는 제14호~제17호로 변경
- 사. 가중치 적용 '자가용 발전설비'의 대상을 명확화(별표2의 비고17 개정)
 - ※ 현행 별표2의 비고 제18호는 제19호로 변경
- 아. <mark>태양광연계 ESS도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충방전시간을 조정 가능하</mark> 도록 하고 제주 풍력연계 ESS 방전시간 개선(별표2의 비고19 개정)
- 자. ESS 충전율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근거(별표2의 비고21 신설)
- 차. ESS 충전율 실적 제공 및 확인 절차(별표2의 비고22 신설)
- 카. ESS 시설보강 안전조치 미이행시 인센티브 조정(별표2의 비고23 신설)
- 타. <mark>충전율 기준 초과시 인센티브 조정기준 마련</mark>(별표2의 비고24 신설)
- 파. <mark>태양광연계 ESS의 최대출력 범위 마련</mark>(별표2의 비고25 신설)
- 하. 제주 풍력연계 ESS 방전량 산정기준 마련(별표2의 비고26 신설)
- 거. <mark>정부 ESS 안전조치 이행시 REC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최초 가중치 인정</mark>(별표2의 비고27 신설)
 - ※ 현행 별표2의 비고 제20호는 제28호로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참조 : 신재생에너 지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(전화: 044-203-5362, 5364, 팩스: 044-203-476 9)로 문의하여 주시거나,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tie.go. kr→예산·법령→입법·행정예고→행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

- 주 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

- 전 화 : 044-203-5362, 5364, 5365, 팩스 : 044-203-4769

- 이메일: kihonglim@korea.kr, pimkey@korea.kr, pp5620@korea.kr

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· 운영지침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① 경쟁입찰 우선 선정방식 변경	
제10조(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) ① (생 략)	제10조(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) ① (생 략)
② 신·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	2
따른 <u>사업자 선정시 전체 선정의</u>	<u>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·재생에</u>
<u>뢰용량의 50% 이상을 100kW 미</u>	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,
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	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
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.	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.

② 차년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

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 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 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정산을 한다. < 단서 신설 >

제11조2(이행비용 보전대상) ① 제11조2(이행비용 보전대상) ①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 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 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 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 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 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 을 연기한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 자가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해 당연도에 미리 이행한 의무공급량

현 행	개 정(안)	
	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	
	산을 한다. 다만, 다음 이행연도 공	
	급의무를 해당연도에 미리 이행한	
	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	
	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	
	위에서 인정한다.	

③ '20년도 신규 공급의무자 추가

급량의 산정기준

□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

구 분 산 식 설비용량 대상자 한국수력원자력 (생략)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<u>그룹</u> I (생략)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&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(생략) 그룹 Ⅱ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처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<u><신 설></u>

<별표1> 공급의무자별 의무공 <별표1>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 량의 산정기준

□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

구 분		산	식
설비용량	대상자	ત્ય	Ţ
	한국수력원자력	(생략)
<u>그룹 I</u>	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	(생략)
그룹 Ⅱ	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&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<u>신</u> 명택발전	(생략)

현 행	개 정(안)
④ 흑액 가중치 적용	

<별표2> 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 <별표2> 신·재생에너지원별 중치

구분	가중치	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
태양광 에너지		(생 략)
기타 신재생	0. 25	IGCC, 부생가스, 폐기물에너지 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), Bio-SRF, <mark><신 설></mark>
에너지		(생 략)

가 중치

구분	가중치	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	
태양광 에너지		(현행과 같음)	
기타 신재생	0. 25	IGCC, 부생가스, 폐기물에너지 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), Bio-SRF, <mark>흑액</mark>	
에너지		(현행과 같음)	

5 건축물 기준 개선

중치

비고

1. "건축물"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(단. 건축물의 용도가 버섯재 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) 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(단,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 된 경우 제외), 기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, ①사람이 출입 할 수 있어야 하며, (이하 생략)

<별표2> 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 <별표2> 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 중치

비고

1. "건축물"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 전(단,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 행령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 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)에 건 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(단,

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제외), ----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(안)
⑥ 그룹I의 기존 석탄혼소 가중	
치 축소	
<별표2> 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	<별표2> 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
비고	비고
<u>< 신 설 ></u>	13. 2020년 7월 1일(고시 개정일)
	이전에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
	완료한 석탄화력 바이오에너지 혼
	소설비 중 별표 1의 그룹 I이 보유
	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인
	증서 가중치를 0.5로 적용한다. 단,
	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혼
	소하는 경우는 별표 2의 표에 따른
	가중치를 적용한다.
<u>비고 13 ~ 16.</u> (생 략)	<u>비고 14 ~ 17.</u> (현행과 같음)
※ 13~16호는 14~17호로 변경	
7 자가용 발전설비 기준 명확화	

<별표2> 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| <별표2> 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

구분	가중치	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
태		
		(생략)
과		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
양 광 에	<u>1. 0</u>	<u>거래하는 경우</u>
너		(all =1.)
너 지		(생략)
기		(생략)
타 신 재 생		수력, 육상풍력, 조력, 기타 바이오에너
신		지(바이오중유, 바이오가스 등), 자가
재	1.0	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
생		경우
에		<u> </u>
너		(생 략)
지		() 1/

구분	가중치	대상에너지 및 기준
	71871	설치유형세부기준
태		(현행과 같음)
양		(, ,
광	1.0	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
에	1.0	거래하는 경우
너		(현행과 같음)
지		(20年 年日)
기		(현행과 같음)
타		수력, 육상풍력, 조력, 기타 바이오에너
신		지(바이오중유, 바이오가스 등), 자가
재	1.0	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
생		경우
에		0 1
너		(혂행과 같음
지		(

현 행	개 정(안)
비고	비고
17. 기타 신·재생에너지에 해당하	18. '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
는 '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	을 거래하는 경우'에 대한 가중치는
을 거래하는 경우'에 대한 가중치	
<u>는</u>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	
중치를 적용한다. 다만, 대상에너	
지 및 기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	
1.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	
는 1.0을 적용한다.	
<u>비고 18.</u> (생 략)	<u>비고 19.</u> (현행과 같음)
※ 18호는 19호로 변경	

8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개선

〈별표2〉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
19.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
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
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
16시까지 시간대에 축전지를 충
전하여 그 외 시간대에 방전하는
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며, RPS
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의 경우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대하여 매3년 단위로 적용하되 충전된 전기중 계절별 최대 부하 시간에 방전(ESS) → 전력계통)하여 활용하는 전력
량에 한하여 적용하며 인버터 및

〈별표2〉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
20
그 외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
한하여 적용하고, RPS대상 풍력설
비와 연계된 ESS 설비의 경우 아래
계절별 방전시간 기준에 따라 방전
한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.
RPS 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
계된 ESS의 충방전 시간은 국내 전
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
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

혀 했

축전지 용량기준은 공급인증기관 다.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 에 대한 계절별 최대 부하 시간은 에 따른다.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되. 국내 전 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 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.

그ㅂ	コリフレ	최대부하 시간	
구분	기간	육지지역	제주지역
춘 계	3월17일 ~ 6월6일	09시 ~ 12시	19시 ~ 22시
하 계	6월7일 ~ 9월20일	13시 ~ 17시	<u>13시 ~ 15시,</u> <u>19시 ~ 21시</u>
추 계	9월21일 ~ 11월14일	18시 ~ 21시	18시 ~ 21시
동 계	11월15일 ~ 3월16일	09시 ~ 12시	18시 ~ 21시

〈 신 설 〉

개 정(안)

그 기준을 따른다. 방전량 산정 등 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

지역	계절	기간	방전 시간
육지	<u>(현행과 같음)</u>		
<u>제주</u>	<u>하계</u>	<u>(</u> 현행과 같음 <u>)</u>	
	그외	하계기간外	<u>5시 ~ 10시</u> 18시 ~ 23시

21. RPS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의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 치를 이행하는 ESS설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 간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8%를 ESS의 방전량에 가산하고, 일반인 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 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3%를 가 산하되. 가산 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 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. 가산기간은 해당 설비 의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 터 15년까지로 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<u>〈 신 설 〉</u>	22. ESS설비의 충전율 안전조치 이
	행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는 ESS
	설비의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
	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. 한국전
	기안전공사는 전월의 ESS 충전율
	실적과 시설보강여부를 확인하여
	그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
	매월 23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.
<u>〈 신 설 〉</u>	23. RPS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
	연계된 ESS설비 중 산업통상자원부
	의 ESS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하지
	않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이행여
	부 확인 후 공급인증서를 일괄 발
/ A] A \	급한다. 24. 비고 제22호에 따라 확인된 충
<u>〈 신 설 〉</u>	24. 비고 제22호에 따라 확인된 충 전율 실적이 충전율 안전조치의 기
	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
	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
	중치는 0을 적용한다. 비고 제21호
	부터 이 호까지의 충전율 안전조치
	와 시설보강조치 적용 관련 세부사
	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
〈 신 설 〉	<u>바에 따른다.</u> 25. <mark>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</mark>
	는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설비의
	방전량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 설비
	용량의 70%이하로 유지하여야 하
	며,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
	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

현 행	개 정(안)
	중치는 0을 적용하되, 전력수급상
	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
	예외로 할 수 있다. 예외사유 등 세
	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
	하는 바에 따른다.
<u>〈 신 설 〉</u>	26. 비고 제20호에 따라 운영하는
	제주지역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
	비의 경우 하계이외의 기간에는 당
	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충전
	하여 방전한 량에 대해 공급인증서
	를 발급하되, 설비운영 과정에서
	불가피하게 발생하는 ESS 설비용량
	의 100% 초과 방전량에 대해서는
	ESS와 연계된 풍력설비의 가중치를
	적용한다.
<u>〈 신 설 〉</u>	27.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설비
	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조치를
	이행하기 위해 ESS 교체, 이전 등
	설비를 변경한 경우 한국전기안전
	공사로 부터 사용전검사시 이행여
	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대해서는 제
	8조에 따른 최초 RPS 설비확인 시
	점의 가중치를 적용한다. 단, 공급
	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의 경
	우 설비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기
	간은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
	용한다.
<u>비고 20.</u> (생 략)	<u>비고 28.</u> (현행과 같음)
※ 20호는 28호로 변경	

현 행	개 정(안)
<u> </u>	부칙 〈제2020-385호, 2020. 7. 1. 〉
	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7
	월 1일부터 시행한다.
	제2조(경과조치) ① 별표 2 비고 1
	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
	이전에「전기사업법」제7조에 따른
	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의 경우
	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	② 별표 2 비고 13의 규정은 2020년
	10월 1일 이후에 공급한 전력량부
	터 적용한다.
	③ 별표 2의 표 및 비고 18의 개정
	<u>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</u>
	일 이전에「전기사업법」제63조에
	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은 설비의 경
	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	④ 별표 2의 비고 제21호에 따른 사
	항은 2020년 3월 1일까지 전기사업
	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
	신청 또는 신고한 설비에 한해
	<u>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기안</u>
	전공사의 시설보강 이행여부를 확
	인받은 경우 확인일의 ESS 방전량
	부터 적용한다. 단, 이 지침의 시행
	일 이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확
	인을 받은 설비는 시행일의 방전량
	부터 적용한다.
	⑤ 별표 2의 비고 제23호의 개정규

현 행	개 정(안)
	정은 2021.1.1일부터 적용한다.
	 ⑥ 별표 2의 비고 제24호 및 제26호
	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
	까지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
	청한 설비에 한해 2020년 7월 1일
	이후 공급한 ESS의 방전량부터 적
	용한다.
	⑦ 별표 2의 비고 제25호에 따른 사
	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
	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
	한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
	ESS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.
	⑧ 별표 2의 비고 제27호에 따른 사
	<u>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</u>
	기안전공사로 부터 안전조치 이행
	여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한해 적용
	<u>한다.</u>